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 금적립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 금적립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 923 제출년월일 : 2009. 11. .

제 출 자: 인천광역시장

□ 폐지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의 적립기간(1984년~2005년)의 종료 및 적립된 기금 고갈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.
- 나. 우리시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(교통연수원)의 운영자금을 당초 『기금』에서 『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』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를 폐지함.

□ 참고자료

- 가. 입법예고 및 군·구 의견수렴(5-3쪽)
- 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(5-4쪽)

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 금적립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는 폐지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제11호를 삭제한다.

실·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	ĥ	무	
	1. 관련법령 위	배여부 등 검토		0	
	2. 행정규제, 물	-가대책위, 부패영향			
	평가 등 심의				
검토사항	3. 조직 및 예수	산수반협의			
	4. 주민의 권리	및 이익침해여부			
	5. 홍보계획(보	도자료) 반영여부			
	6. 기타 문제점				
실·국별 의견수렴결과					
협의개요	실·국별	제출의견	검토	내용	
-기 간:					
2009.10.19~					
10.30		"해 당 없 음"			
-내 용					
: 의견수렴					
입법예고결과					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제출의견	조치	내용	
-기 간:					
2009.10.12~					
11.2		" - 1 - 1 - 1 - 1 - 1 - 1 - 1 - 1 - 1 -			
-방 법		"해 당 없 음"			
: 시 홈페이지					
및 시보게재					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	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관계법령	제4조 (기금의 존속기한)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	제15조 (기금의 통합·폐지)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1.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.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. 「지방재정법」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관련법규 정비대상	"해당사항 없음"
관련자료	[운수사업체종사자교육시설운영기금] ○ 기금 현황(2009.01.01 현재): 2,362,816천원 ○ 기금 지원(2009.12.31 기준): 1,473,825천원 ○ 기금 잔액(2009.12.31 기준): 888,991천원 ※ 교통연수원 예산(2009.제3회 추경): 1,707,919천원 ○ 시비보조금(기금): 1,473,825천원 ○ 교육수수료, 대관료 등: 234,094천원